



대한체육회



수 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16조(후보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나. 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16조(후보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2.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2022.11.11.)에 따라 정관 개정 허가 사항 중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3. 이에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추가 반영되어 안내하오니, 귀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한체육회 회원 시·도체육회규정 개정 시 별도 안내(지방체육회장 선거 이후)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11조의5제4호, 제5호)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
-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

☐ 행정사항

- 소관 시·군·구체육회에 내용 전달 및 안내

붙임: 1.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 1부

2. 대한체육회 정관 전문 1부. 끝.

대한체육회장



수신 시도체육회장

★과장

안기표

부장

전결 11/16
심상보

협조자

시행 지역체육부-3810 (2022.11.17.) 접수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대한체육회) / <http://www.sports.or.kr>
전화 02-2144-8202 /전송 / gpahn@sports.or.kr / 공개